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33

발의연월일: 2022. 7. 25.

발 의 자:김정호·김경만·김윤덕

박상혁 • 서동용 • 신정훈

신현영 · 어기구 · 위성곤

윤준병 • 윤후덕 • 정춘숙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절반에 해당하는 50.2%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집중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2020년 지역 내 총생산에 따르면,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추진된 정책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제고하는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법인이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인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관련 조항의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법인 본사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 특례 및 세액 감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 시세액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

중도를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함(안 제61조).
- 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주는 과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 27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 유)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3) ----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 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 년 12월 31일-----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 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 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 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 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 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 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 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 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 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 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u>.</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u>2027년 12</u>
월 31일
<u>2027년 12</u>
<u>월 31일2027년</u>
<u>12월 31일</u>
2030년 12월 31일
<u> </u>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 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⑨ (생 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 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 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 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 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 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u>2027년 12월 31일</u>
<u>2027년 12월 31일</u>
<u>2027년 12월 31일</u>
2030년 12월 31
일

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② ~ ⑦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⑦ (현행과 같음)